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엄태봉 _ 토호쿠 대학

목 차

- I. 머리말
- II. 회담 중단기 이전의 문화재 문제 교섭
- III. 회담 중단기의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1)
- IV. 회담 중단기의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2)
- V.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일양국의 인식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일회담 중단기 시기의 문화재 문제의 쟁점인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검토하고, 구두전달사항이 문화재 문제와 한일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구두전달사항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문화재 인도라는 의미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였고, 전면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수정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인도 시기와 관련된 표현에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러한 구두전달사항은 회담 중단기 이후의 문화재 문제 교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인도라는 표현은 제7차 회담 때 체결된 협정에 대해 한일양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인 「日韓文化財問題の構造と限界－1951~1965年」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국이 해석을 달리하는 해결방식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였다.

주제어

한일회담, 문화재 문제, 구두전달사항, 인도, 외교 교섭

.....

I . 머리말

본고는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 교섭, 즉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검토하고 구두전달사항이 문화재 문제와 한일회담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일양국은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한일회담의 각 의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축적되어 왔다.

한일회담 의제 중 종래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문화재 문제는 북관대첩비(2005년), 조선왕조실록(2006년), 조선왕실의궤(2011년) 등이 한일양국 간의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써 국성하,¹⁾ 박훈,²⁾ 류미나,³⁾ 나가사와 유코(長澤裕子),⁴⁾ 조

1)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Vol.25, 2005.
2) 박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2010.
3) 류미나,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집,

윤수⁵⁾ 등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문화재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한일회담 중단기에 이루어진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일회담 연구에서 회담 중단기와 관련된 연구 자체가 지지부진했던 것과 함께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107점의 문화재가 인도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구두전달사항의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7차 회담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약 1,400여 점의 문화재가 인도되기 이전에, 이미 회담 중단기 시기 구두전달사항이라는 문화재 문제의 첫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를 통해 107점의 문화재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두전달사항이 어떻게 제기되었고, 한일양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한 후, 구두전달사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2009; 류미나,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1958년 일본의 제1차 문화재 반환까지의 교섭과정을 사례로—」, 『일본역사연구』 제32집, 2010; 류미나, 「문화재 반환과 둘러싼 한일회담의 한계—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0집, 2014.

4) 長澤裕子, 「日韓會談と韓国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請求權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5) 조윤수,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No.51, 2016.

Ⅱ . 회담 중단기 이전의 문화재 문제 교섭

주지하다시피 한일양국은 과거사 청산과 국교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회담을 개최하였다. 1951년 10월 20일에 시작된 한일회담은 문화재 문제를 비롯하여, 기본 관계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어업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14년여에 걸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문화재 문제는 제1차 회담에서 제3차 회담 시기까지 청구권 위원회의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문화재 문제가 가장 처음 제기된 것은 제1차 회담의 예비회담(1951년 10월 20일~1952년 2월 14일) 시기였는데, 1952년 1월 9일에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김용식 주일공사는 치바 코(千葉皓) 사무관에게 앞으로 개최될 본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고미술품과 고서적 등 국보로 생각되는 문화재의 반환⁶⁾을 제안하는 한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에게도 이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⁷⁾ 또한 김용식 주일공사는 일본 측이 문화재를 반환할 경우 “그것은 금전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종류의 것들도 약탈재산으로써 다른 나라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필자 주: 한국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큰 희생을 하지 않고 선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⁸⁾

본회담(1952년 2월 15일~4월 15일)이 시작되자 한국 측은 제1차 청구권 위원회(2월 20일)에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을 일본 측에게 제출하였다.⁹⁾ 이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이 8개의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었

6) 「金公使との會談要旨」, 記入なし, 1952年 1月 9日, 文書番号: 396. 이하에서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외교문서에 대해 문서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7) 김용식, 『새벽의 약속-김용식 외교 33년』, 김영사, 1993년, 93쪽.

8) 「金公使との會談要旨」, 앞의 문서.

는데, 문화재 문제는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의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을 반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1항목에 설정되어 있었다. 제2차 청구권 위원회(2월 23일)에서 한국 측은 제1항목에 대해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등은 부자연스러운, 즉 탈취나 한국의 의지에 반해 반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제1항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한국 측은 제3차 청구권 위원회(2월 27일)에서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요강의 세목 제1항”을 일본 측에게 제출하였다.¹¹⁾ 이 세목은 고서적과 미술·공예품들의 소재지와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 자세한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측은 가능한 한 어떤 책들이 있는지, 되도록 완전한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 측에게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¹²⁾

한국 측은 제2차 회담(1953년 4월 15일~7월 23일)이 개최되자, 문화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 비공식 회담(5월 14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 일본 각 문고 소장”¹³⁾과 “일본 소재 한국 국보 미술 공예품 목록”¹⁴⁾을 일본

9) 「日韓會談第一回財産請求權問題委員會議事録」, 記入なし, 文書番号: 1174.

10)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화위원회회의록, 제1-8차, 1952.2.20.-4.1』, 프레임 번호: 294. 이하에서는 한일회담 관련 한국외교문서에 대해 문서철 제목, 프레임 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1) 세목의 내용은 「日韓會談第三回請求權委員會議事要録」, 記入なし, 文書番号: 1177을 참조.

12) 「日韓會談第三回請求權委員會議事録」, 記入なし, 文書番号: 1178.

13) 목록의 내용은 「韓國國寶古書籍目録日本各文庫所藏(但一部調査未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文章番号: 379를 참조.

14) 목록의 내용은 「日本所在韓國國寶美術工芸品目録(但一部調査未了・要追補)」, 記入なし, 文章番号: 381를 참조.

측에게 제출하였다.¹⁵⁾ 이후 한국 측은 제2차 청구권 위원회(5월 19일)와 제3차 청구권 위원회(6월 15일)에서 문화재 목록에 관한 일본 측의 조사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문화재 담당자에게 의뢰하였으나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개괄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¹⁶⁾

제3차 회담(1953년 10월 6일~10월 21일)이 개최되자, 한국 측은 제2차 청구권 위원회(10월 15일)에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제2차분)”을 일본 측에게 제출하였다.¹⁷⁾ 이는 제2차 회담 때 제출한 고서적 목록의 추가분으로써 동양문고, 카와이 문고 등에 소장된 고서적이 추가된 것이었다. 일본 측은 제2차 회담 때 한국 측이 제출한 문화재 목록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은 없으며 일본 측으로서는 의무로써 반환할 것은 없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는 증정의 형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법적 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 일본이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제안해 왔으나, 일본 측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한국 측도 법적 견해를 밝히겠다고 강하게 응수하였다.¹⁸⁾

이후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제3차 회담이 결렬되었고, 회담 재개를 위한 비공식 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문화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

15) 日韓會談問題別經緯(6) (文化財問題), 北東アジア課, 1962年 7月 1日, 文章番号: 535.

16) 「日韓交渉會議議事要録(二二) 第三回請求權關係部會」,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6月 15日, 文書番号: 693.

17) 목록의 내용은 「韓國國寶古書籍目録(第二次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文章番号: 380을 참조.

18) 『제3차 한일회담(1953.10.9.-21)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2차, 1953.10.9.-15』, 프레임 번호: 1391.

Ⅲ. 회담 중단기의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1)

1. 한국 측의 인도 제안과 일본 측의 기증 제안

제3차 회담의 결렬 이후, 문화재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56년 10월 30일에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에서 김용식 주일공사는 보물, 즉 문화재 문제에 관해 언급하였고, 나카가와 도루(中川融) 아시아 국장은 “제3차 회담 선에서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한국 독립의 축하로써 약간의 고미술품을 기증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¹⁹⁾ 일본 측은 1957년 2월 12일에 열린 회담에서도 “의무가 아닌 한국 독립의 축하로써 국유의 조선 고미술품을 선물해도 좋다고 생각한다”²⁰⁾며 문화재의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일본 측의 태도는 제3차 한일회담 결렬 직후에 재차 확인된 문화재 문제에 대한 방침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에 대해 “청구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문화재 중 국유의 문화재에서 적당한 것을 약간 선택하여, 이것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²¹⁾ 이를 통해 한국의 국민감정에 어필할 수 있으며 한일양국의 우호관계수립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편 한국 측은 동년 2월 20일²²⁾에 열린 회담에서 억류자 석방 문제 및 한일 회담 재개에 관한 한국 측의 방침이 결정되었음을 일본 측에게 전하면서, 문화재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한국 측은 회담이 재개될

19)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6年 10月30日, 文書番号: 1431.

20)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12日, 文書番号: 680.

21) 「韓国文化財の提供について」, アジア二課, 1953年 10月23日, 文書番号: 567.

22) 이하에서는 1957년에 진행된 교섭에 대해 연도의 표기 없이 날짜만 표기하기로 하며, 1957년 이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를 표기하기로 한다.

때 그것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본 측이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데,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고미술품의 반환을 제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이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 측에서도 문화재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을 잡기가 어려워짐으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 대해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출토 문화재를 조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문부성 측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한국 측은 문화재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추상적인 방침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제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재차 자발적인 문화재 반환을 제안하였다.²³⁾

한국 측은 2월 21일에 열린 회담에서도 문화재 문제에 관해 언급하였다. 일본 측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외무대신이 김용식 주일공사와 회담을 할 때 “한국 독립을 축하하는 일본 국민의 기분을 표명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소유한 약간의 한국 출토 고미술품을 기증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그를 위해서는 문부성 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증은 곤란하며 반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 측은 반환은 곤란하며 일본에는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응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다시 인도로써 문화재를 받고 싶다고 말하자, 일본 측은 hand over라면 고려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²⁴⁾. 이후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해 “약간”을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할 것, 형식은 구두 상의 표현이 아닌 “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일본정부가 소유한 한국 출토 고미술품으로써 한국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목록이 작성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건네 줄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일본 측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일본 국민이 한국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23)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0日, 文書番号: 680.

24)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1日, 文書番号: 680.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이 시기의 한국 측의 인도 제안²⁶⁾과 일본 측의 구두를 통한 기증 제안은 제4차 회담 개최 직후 106점의 문화재 인도가 이루어진 계기, 즉 구두전달사항의 시발점이 된다.

일본 측은 2월 22일에 열린 회담에서 일본의 국내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교정상화 시에 축하의 의미로써 문화재를 건네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건네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전날 회의에서 언급한 구두사항을 언명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²⁷⁾

일본 측은 2월 23일에 열린 회담에서 한국 측의 의견을 반영한 구두 전달사항을 제안하였으나, 문부성 측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문화재를 건네기는 어려우며, 문부성 측이 동의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기시 외무대신이 “한일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양국 간의 정식국교수립 시 일본국민의 축의를 표명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한국 출토 고미술품에 대해 한국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건넬 것을 고려한다”라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정식

25) 「日韓會談問題別経緯－文化財問題」, 北東アジア課, 1962年 10月 1日 (이하, 「日韓會談問題別経緯－文化財問題」), 文章番号: 535.

26) 김용식의 회고록에는 일본 측이 먼저 문화재의 인도를 제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 관련 일본 외교문서를 검토해 보면, 한국 측이 먼저 인도를 제안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국 측은 제1차 회담에서 제3차 회담 당시, 그리고 회담 중단기의 1957년 2월 20일의 회담 때까지 일본 측의 자발적인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2월 21에서 먼저 인도를 제안하였다. 종래의 문화재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한국의 입장과 일본 측의 문화재 기증에 대한 “강제적으로 약탈한 것을 되돌리는 것인데, 그러한 용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기증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승만의 강경한 자세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측의 방침이 반환에서 인도로 전환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회담 중단기 시기에 한국 내부에서 문화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방침이 반환에서 인도로, 혹은 하나의 선택지로써 인도가 선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침이 어떠한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갔는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27)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22日, 文書番号: 680.

국교수립이나 일본 국민의 축의 등과 같은 표현은 필요 없으며, “한일 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일본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한국 출토 고미술품에 대해 한국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건네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제안하였다.²⁸⁾

이 시기, 일본 측은 문부성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일단 구두로써 문화재를 건넨다는 것으로 문화재 문제를 타협하려고 했던 반면, 한국 측은 반환이 아닌 인도를 제안하였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문화재를 건넨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 측의 안을 수정하려고 하였다.

2. 일본 측의 구두전달사항 제출

일본 측은 2월 25일에 열린 회담에서 “한일 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적당한 시기에 일본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한국 출토 고미술품 중에서 한국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라는 구두 전달사항을 한국 측에게 제출하였다. 이것은 2월 21일부터 논의된 구두 전달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제안과 한국 측의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적당한 시기”는 “되도록 빠른 시기”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 측은 구두전달사항을 구상서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공동성명안에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²⁹⁾. 이후의 문화재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 구두전달사항의 수정과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2월 28일의 회담에서는 인도로 할 것인가, 증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측은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문부성 측의 정식 견해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며, 문부성 측이 구두전달사항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인도라는 표현에

28)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3日, 文書番号: 680.

29)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5日, 文書番号: 680.

대해서는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증이나 양여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증이나 증여는 곤란하며, “인도 한다” 혹은 “건넨다”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³⁰⁾

한편 일본 측은 3월 2일에 열린 회담에서 구두전달사항에 대해 문부성 측과 논의하였지만, “취지에는 찬성하기 어려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한다”³¹⁾라는 반대가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일본 측으로서 “한일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 시, 일본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한국 출토 고미술품으로 한국에게 할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기증하기로 한다”가 최대한 가능한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고미술품을 반환해 준다면, 한국의 대일 감정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이후의 재산 문제의 절충도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은 안은 생각한 것”이라며 문화재 문제를 다음 주에 타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³²⁾

하지만 한국 측의 바람대로 문화재 문제는 쉽게 타결되지 않았다. 일본 측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보호위원회와 대학 측의 반대가 있고, 그것이 여론을 자극하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설명하면서 구두전달사항을 관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억류자 석방 때가 아닌, 그 시기를 약간 늦춰 본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구두전달사항을 받아도 되지만, 반드시 한국 측에게 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으면 하고, 그 내용은 “한일회담의 의제와는 별도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일본정부는 정부가 소유한 한국 출토 고미술품 중 한국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³³⁾

30)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8日, 文書番号: 680.

31) 「韓国關係文化財參考資料」, 文化財保護委員會, 1958年 2月6日 (이하, 「韓国關係文化財參考資料」), 文書番号: 567.

32)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3月 2日, 文書番号: 680.

33)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3月 6日, 文書番号: 680.

김용식 주일공사는 수상에 취임한 기시와도 3월 9일에 회담을 가지면서, 기시 수상이 문화재를 인도한다는 취지를 언급해 준다면 교섭이 잘 진행될 것이라며 문화재 문제를 언급하였고, 기시 수상 또한 문화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³⁴⁾

IV. 회담 중단기의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2)

1. 구두전달사항의 첫 합의

3월 18일, 일본 측은 전면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문서 원안을 한국 측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억류자 상호석방에 관한 각서, 석방될 재일 한국인의 처우에 관한 부속양해, 재개될 전면회담의 의제를 정하는 합의사록, 구보타 발언과 대한청구권 철회에 관한 구상서, 그리고 문화재 문제에 관한 구두전달사항이었다.³⁵⁾ 한일양국은 이 합의문서 원안을 바탕으로 5월부터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교섭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구두전달사항에 관한 합의문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⁶⁾

Oral Statement

Apart from the agenda of the Japan-Korea talks, the Japanese

34) 『岸総理金公私と会見の件』, 外務省, 1957年 3月 9日, 文書番号: 682.

3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식민지관계 청산연구: 청산소멸의 정치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과 吉澤文寿, 『戦後日韓關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6)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2 1957)』, 프레임 번호: 1748.

Government would like to hand over to the Korean Government,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objects of ancient art of the Korean origin which are in the posses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hich it finds practicable to deliver to Korea.

한국정부도 일본 측이 제출한 합의문서안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제시할 원안과 그에 관한 훈령을 작성하였다. 구두전달사항에 관한 한국 측의 원안은 다음과 같았고,³⁷⁾ 이것을 관철시킬 것이 지시되었다.³⁸⁾

Aside from the agenda of the formal Conference,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turn over to Korea, as soon as possibl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whos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

한편 1957년 5월 1일에 주일한국대표부대사에 취임한 김유택은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6월 7일 기시 수상과 회담을 갖고, 전면회담 재개를 위해 한일양국이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기시 수상은 이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의 반환이나 전시 중의 급료 지불, 그 외에 있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 측도 우리가 여러 주장을 철회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³⁹⁾고 말하고, 6월 11일의 회담에서도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문화재와 같은 것도, 정부의 힘으로도 어떻게 되지 않는 것은 별개로 하되 되도록 반환”⁴⁰⁾한다면서 문화재 문제를 언급하였다.

문화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한일양국은 구두전달사항을 포함한 합의문서안에 대해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였다.

37)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 1754.

38)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 1750.

39) 「岸総理, 金韓国大使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 7日, 文書番号: 687.

40) 「岸総理, 金大使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 11日, 文書番号: 687.

김유택 주일대사와 기시 수상의 회담 이후, 6월 13일에 2번에 걸친 교섭이 이뤄졌는데, 그 목적은 억류자 석방 문제와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합의문서 원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교섭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6월 16일의 합의문서 원안이 작성된다.

문화재 문제에 관한 교섭에서는 일본 측이 3월 18일에 제출한 구두 전달사항을 바탕으로 그 표현을 수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먼저 인도 의사를 나타내는 표현인 “would like to hand over”를 “will turn over”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문화재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국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측과 논의 끝에 “would like to hand over”로 정한 것이었고, “would like to”로도 일본 측의 견해가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다고 응수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고, 일본 측이 “will”에도 “would like to”와 같은 의미의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will”로 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한국 측의 의견에 동의하였다.⁴¹⁾

다음으로 인도 시기와 관련된 표현인 “at an early possible date”에 대해, 한국 측은 그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as soon as possible” 또는 “as soon as practicable”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고,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측은 “which it finds practicable to deliver to Korea”를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은 이에 동의하였다.⁴²⁾

문화재의 원산지과 관련된 표현인 “those objects of ancient art of the Korean origin”과 문화재 소유자와 관련된 표현인 “in the possession”에 대

41) 「六月十三日, 大野次官, 金韓国大使會談要領 (その二)」, 外務省, 1957年 6月 13日 (이하, 「大野一金大使會談, その二」), 文書番号: 686.

42) 위와 같음.

해 한국 측은 전자를 “those Korean art objects”로 수정할 것과 후자의 앞에 “now”를 표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구두전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⁴³⁾

Oral Statement

Aside from the agenda of the overall talk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turn over to Korea,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

이 교섭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인도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인도 시기도 가능한 한 빠른 시기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원소유자가 한국이었다는 것을 보다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즉 한국 측은 제1차 회담부터 주장해 왔던 반환은 아니지만, 한국 출토의 문화재를 현소유자인 일본 측이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국 측에게 인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한국 측에게 유리한 표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다.

한편 일본 측은 “hand over”를 “turn over”로, “would like to”를 “will”로 하는 등 한국 측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인도 시기와 관련된 두 번째 표현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무엇이든 빠르다나 즉시라는 글자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생각나는 대로 수정을 제안하였다”⁴⁴⁾고 추측하면서 구두전달사항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표현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도 시기와 관련된 첫 번째 표현에 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문화재 인

43) 위와 같음.

44) 「日韓會談問題別經緯－文化財問題」, 文章番号: 535.

도에 대한 문부성 측의 반대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문화재 인도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견지해 왔다.⁴⁵⁾ 1953년 10월 17일에 외무성은 한국과 관련된 약간의 문화재를 한국에게 기증할 것을 문부성 측과 논의하였지만, 문부성 측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또한 1957년 2월에 구두전달사항을 한국 측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는데, 문부성 측은 그 취지에는 찬성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고려한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의 논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⁴⁶⁾ 이처럼 이 시기 문부성 측은 문화재를 한국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본 국내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은 문화재 인도로 인해 여론의 비판이 수습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6월 15일과 6월 16일에는 6월 13일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합 의문서의 최종적인 수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재 문제에 관한 논의는 6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한국 측은 먼저 구두전달사항의 일문(日文) 표현인 “되도록 빠른 시기에”를 “되도록 빨리”로 수정할 것과, 그 표현의 앞에 “한국에게”를 넣을 것, “즉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수정할 것을 일본 측에게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일문을 정문(正文)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 측의 요구에 동의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측은 일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수하였다. 일본 측은 외무대신이 일본어로 전달하는 말에 권위가 있으며, 영문은 어디까지나 번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측은 “immediate”의 가장 적당한 말은 “즉시”라고

45) 문화재 문제를 둘러싼 외무성과 문부성 측의 대립과 타협은 류미나(2009)와 巖泰奉, 「日韓會談の文化財問題に関する考察—官僚政治モデルを中心に」, 東北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課程前期修士論文, 2011을 참조.

46) 「韓国關係文化財參考資料」, 文書番号: 567.

설명하였고, 한국 측도 이에 동의하였다.⁴⁷⁾

이어서 일본 측은 같은 날 밤에 열린 회담에서 합의문서의 공개·비공개 문제와 발표 일자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기시 수상이 구두전달사항을 발표하는 것과 한국 측에게 영문의 구두전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은 한국과는 관계가 없으며, 한국 측이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 측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⁴⁸⁾

2. 합의된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수정요구

6월의 교섭을 통해 구두전달사항을 비롯한 8개의 합의문서⁴⁹⁾가 작성되었고 제3차 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이 재개되는 듯이 보였다. 일본 측은 1957년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기시 수상의 방미 때까지 합의문서를 작성·서명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측이 최종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일양국은 합의문서 수정에 대한 교섭을 다시 진행하였다.

6월 17일, 김유택 주일대사는 국무회의에서 합의문서를 심의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정부도 기시 수상의 방미 전까지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노 가쓰미(大野勝巳) 외무차관에게 한국 측의 사정을 설명하였다.⁵⁰⁾

47) 「三宅參事官, 崔參事官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15日, 文書番号: 111.

48) 「中川アジア局長, 三宅參事官と崔參事官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 15日, 文書番号: 112.

49) 이 교섭을 통해 구두전달사항, 전면회담의 의제를 정하는 합의의사록, 석방될 재일한국인의 처우에 관한 부속양해, 억류자 상호석방에 관한 각서,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 구보타 발언과 대한청구권 철회에 관한 구상서, 공동 커뮤니케 등 8개의 합의문서 원안이 작성되었다. 한일양국은 앞의 세 가지 합의문서를 비공개로, 나머지 문서는 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50) 「六月十六日 大野次官と金韓國大使との會談要領等」, 記入なし, 1957年 6月 17日,

김유택 주일대사는 6월 25일에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합의문서가 아직 허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서, 합의문서의 몇몇 곳에 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⁵¹⁾ 한국 측이 일본 측에게 합의문서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한국정부가 주일대표부에게 보낸 6월 22일자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

6월 25일의 비공식 회담에서 문화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6월 22일자 훈령에는 다음과 같은 구두전달사항이 담겨져 있었다.⁵²⁾

Oral Statement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turn over to Korea,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 and for the later transfer of the said objects discussion and settlement will be made at the formal talks.

이 훈령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문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수정된 것이었다. 합의문서의 첫 부분인 Aside from 이하의 문장이 삭제되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and for the later transfer 이하의 문장이 새롭게 삽입되었다. 한국정부는 마지막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재개될 전면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한국 측의 의지를 일본 측에게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게도 이를 동의시킴으로써 전면회담에서 문화재 문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文書番号: 686.

51) 김유택 주일대사는 그 이유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계부처(특히, 군부) 및 여당에서 강경론이 있었고, 이를 외무부가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음.

52)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2 1957)』, 프레임 번호: 1778.

한국 측이 요구한 6월 25일의 추가 수정에 대해 일본 측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이 약 한 달 간 중단되었으나,⁵³⁾ 7월 23일부터 6번에 걸친 비공식 회담이 열려 한국 측이 요구한 추가 수정을 논의하게 된다.

합의문서 수정에 관한 교섭은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6월 22일자 의 훈령을 바탕으로 구두전달사항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미술품 인도에 관한 Oral Statement에서 Aside from 이하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도 김-나카가와 회담에서 여러 가지 경위가 있었으나 원안과 같이 된 것이다”, “미술품 문제는 agenda에 없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말한다면 그 점은 큰 변경이 된다. 귀측의 수정으로 이 문제는 정식 회담의 의제가 되는 것이다”라며 한국 측에게 따졌고, 한국 측은 “(필자 주: Aside from 이하를) 삭제하는 대신에 그러한 의미를 for later transfer 이하의 자구를 삽입하여 표현하였다. 이것은 (필자 주: 청구권 문제로써) agenda에 들어있다” 등으로 응수하였다.⁵⁴⁾ 한국 측은 재개될 전면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의제로써 논의할 것을 일본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러한 자구의 수정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유태하 주일공사도 이 표현에 대해 “이 문제는 사실 외무장관이 까다롭게 주장하고 있는 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수정하는지 나 자신도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장관은 이를 주장하고 물러서지 않는다”⁵⁵⁾

53) 일본 측은 비공식 회담의 재개 경위에 대해 “(필자 주 : 한국 측이) 수정을 요구한 점들 중에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결정된 실질적인 내용을 손대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은 그러한 수정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 후 7월 16일에 한국 측은 사무당국과 기술적인 자구의 수정만을 얘기하고 싶다는 취지를 제안해 왔기 때문에, 우리 측은 그 점을 이해하고 7월 23일에 사무절충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 측의 수정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알 수가 있다. 『總理訪米後の日韓交渉の経緯』, 記入なし, 1957年 9月 4日, 文章番号: 1522.

54) 『板垣アジア局長, 三宅参事官と柳公使, 崔参事官會議要領』, 記入なし, 1957年 7月 31日, 文章番号: 108.

55) 위와 같음.

라고 일본 측에게 솔직히 말하였는데, 8월 20일에 열린 교섭에서 한국 측이 이 표현을 일본 측에게 다시 설명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정부가 주일대표부에게 했던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한국 측은 문화재 문제를 전면회담에서 의제로써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확실하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수정요구에 대해 이미 반대하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 즉 한국 측이 Aside from 이하의 문장을 삭제할 것에 대해 “이러한 미술품들은 본래 한국이 소유했고, 현재 일본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환은 당연한 것이라는, 청구권의 1항목에 들어있는 종래의 그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⁵⁶⁾고 되어 있다. 이러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던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8월 20일에는 두 차례에 걸친 교섭이 진행되었다. 한국 측은 오전에 열린 첫 번째 교섭에서 7월 31일의 회담에서 제출한 구두전달사항 중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and for the later transfer of the said objects discussion and settlement will be made at the overall talks.”에 대해 그 의미는 “..., and for the later transfer of other Korean art objects discussion and settlement will be made at the overall talks.”라고 설명하였다.⁵⁷⁾ 즉 즉시 인도되는 문화재 이외의 것들도 전면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이 수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⁵⁸⁾

6월 12일에 우리 측이 동의한 원안에는 단순히 “일본국 정부가 인

56) 「韓国側再修正案に対する対応要領案」, 記入なし, 1957年 6月 25日, 文書番号: 1521.

57) 「板垣アジア局長, 柳公使との会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8月 20日, 文書番号: 114.

58) 위와 같음.

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 후 귀측이 “즉시 인도 가능한 것”으로 고칠 것을 주장해서, 우리 측이 그것에 동의 하였던 바인데, 귀측은 이러한 수정이 자국에게 있어서 오히려 불리 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곤란해지자, 지금과 같은 재수정안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6월 12일의 원안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좋으나, 어쨌든 귀측의 이번 재수정안은 김-나카가와 회담과 그 이외의 경위를 거쳐 결정된 취지와 다르고, 그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그대로 수락할 수 없으며, 우리 측에서 적당한 안을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 측은 이후 오후에 열린 두 번째 교섭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이상의 수정은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⁵⁹⁾

Oral Statement

Aside from the agenda of the overall talk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turn over to the Republic of Korea,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which it find spracticable to deliver to Korea.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⁶⁰⁾

한국 측

즉시 인도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건네받은 후, 그 이외의 것들

59) 「昭和三十二年八月二十日 三宅参事官と崔参事官会谈録」, 記入なし, 1957年 8月 20日, 文書番号: 111.

60) 위와 같음.

에 대해서는 전면회담에서 토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한국 측의 강한 희망이므로, 귀측의 이 수정안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일본 측

무릇, 이러한 고미술품은 일본정부가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가져온 것이며, 한국 측의 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쪽의 호의적인 제스처로써 일본정부가 인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가능한 한 빨리 적당한 기회에 한국에게 선물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며, 김 공사도 이것을 양해하였고 또한 원안과 같은 구두전달안을 희망했던 바이다.

한국 측

그러나 인도 가능한지 어떤지를 일본정부가 주관적으로 맘대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록에는 다음 전면회담 의제의 5항목 중의 하나로써 재산청구권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 측은 이전의 전면회담에서 제출한 청구권을 다음 전면회담에도 제출할 것이며, 일본 측은 그 해결을 위해 성의를 가지고 토의를 한다는 취지가 쓰여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이전의 전면회담에서 제출한 청구권 중에는, 고미술품 인도가 들어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측은 당연히 다음 전면회담에서 고미술품과 관련된 토의에 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 측

구두전달사항안의 말머리에 고미술품 인도 문제는, 다음 전면회담의 의제와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취지가 특히 쓰여 있고, 김 공사는 그 걸로 괜찮으니까 이러한 구두전달을 아무쪼록 해 달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 측의 관계성청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것을 승낙한 바 있다. 만약 귀측이 이 원안에 만족하지 않고 전면회담에서 토의하자고 말한다

면, 우리 측으로서는 구두전달은 원래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을 철회하고 즉시 인도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떠나 모두 다음 전면회담에서 토의하기로 해도 좋다.

재개될 전면회담에서 인도될 문화재 이외의 것들도 논의하기 위해 합의된 구두전달사항을 더욱 수정했던 한국 측은 6월의 합의문서과 일본 측의 수정안의 의미가 거의 다르지 않았고, 한국 측의 수정요구가 모두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한 한국 측은 전면회담의 의제로써 논의될 청구권에는 고미술품, 즉 문화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구두전달사항은 전면회담의 의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써 문화재 문제를 취급해야 할 것이며, 한국 측이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구두전달사항을 철회하자고 한국 측에게 강력하게 응수하였고, 결국 구두전달사항 수정에 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김유택 주일대사는 10월 2일자의 외무장관에 대한 보고서에서 6월 22일자 훈령을 바탕으로 일본 측과 교섭을 했으나, 교섭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⁶¹⁾ 한국정부는 전면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11월 11일자의 최종수정안을 주일대표부에게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구상서는 일본 측의 안을 수용하되, 다른 문서는 한국의 수정안대로 합의하는 것이었다.⁶²⁾

3. 구두전달사항의 최종 합의

구두전달사항 등 6월의 합의문서 수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척되지 않

61)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2 1957)』, 프레임 번호 : 1823.

62)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 1826.

은 상황에서, 김유택 주일대사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朗) 외무 대신 간의 회담이 11월 27일에 열렸다. 이 회담의 결과는 최종 합의에 이른 12월 29일의 회담의 토대가 된다.

11월 27일에 열린 회담에서 한일양국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면서도 문화재 문제와 청구권 문제 등 자신들의 입장을 각각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문화재 및 퇴거강제에 관한 한국 측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청구권 수정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의 수정을 생각해도 괜찮다”고 제안하였고, 일본 측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 개, 두 개의 작은 자구 수정 이외에는 일절 응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측이 청구권에 관한 6월의 원안을 받아들인다면, 문화재 및 퇴거강제에 관한 자구의 수정을 생각해도 된다”라고 제안하였다.⁶³⁾

12월 29일에 열린 회담에서 한일양국은 위와 같은 방침에 동의하고,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를 제외한 억류자 석방 문제 및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6월의 합의 문서에 대해 한국 측의 수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구상서와 합의 의사록 제4조, 공동 발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⁶⁴⁾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수정요구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청구권 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이유는 억류자 석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즉 “억류된 일본 어부 중에는 3년 이상이나 억류되고 있는 자도 있고, 어부와 그들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적 인도적 견지”⁶⁵⁾에서 한국 측의 수정요구에 응했던 것이었다.

63) 「十一月二七日の藤山外務大臣と金大使との会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11月 29日, 文書番号: 115.

64)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2 1957)』, 프레임 번호: 1730. 합의문서들의 내용은 「日韓會談重要資料集」, 北東アジア局, 1960年 4月 1日 (이하, 「日韓會談重要資料集」), 文書番号: 525를 참조.

그러나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수정에는 응하지 않고, 6월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⁶⁶⁾ 그 이유는, 한국 측의 청구권 금액 요구가 명확하지 않았고 미국의 “한일 청구권 해결에 관한 일본국의 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합중국의 견해 표명”이라는 구상서에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상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구상서의 취지는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주장 할 수 없지만, 한국정부가 조선에 있는 일본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청구권 문제를 논의한다. 다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⁶⁷⁾는 것이었다. 즉 한국 측은 구상서의 내용이 대일 청구권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청구권 금액의 상쇄 요구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수정을 원했던 것이었으나,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본의 대한청구권 철회가 한국의 대일 청구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을 한국 측이 받아들일도록 했던 것이었다.⁶⁸⁾

한편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아래와 같은 최종 합의문서가 작성되는 한편 서명식 때 일본의 외무대신이 영어로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⁶⁹⁾

65) 「日韓交渉の経緯と現状(アジア太平洋地域館長會議におけるアジア局長説明資料)」, ア一課, 1958年 3月 10日, 文書番号: 1535.

66)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문서에는 “구상서”와 “합의의사록 제4조”가 있었는데, 일본 측의 요구대로 6월의 합의문서 원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구상서는 일본이 대한청구권을 철회한다는 내용이며, 합의의사록 제4조에 대해서는 쟁점이 된 제3항목의 날짜만을 바꿔, “일본국 외무대신 본대신은, 1957년 12월 31일자로 ‘한일 청구권 해결에 관한 일본국의 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합중국의 견해 표명’에 대해, 대한민국정부도 그 표명에 같은 의견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본 대신은, 이 미합중국의 표명이 재산청구권의 상호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합의되었다.

67) 미국의 구상서에 대한 전문은 「日韓会谈重要資料集」, 文書番号: 525를 참조.

68) 자세한 내용은 장박진, 앞의 책, 254-284쪽을 참조.

Oral Statement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turn over to the Republic of Korea, at an early possible date, those Korean art objects now in its possession of which the immediate transfer is possible, and for the later transfer of the said objects discussion and settlement will be made at the overall talks.

한일양국은 6월의 합의문서 작성 이후, 약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12월 31일, 김유탉 주일대사와 후지야마 외무대신은 합의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고 한일공동성명도 발표되었다. 이 서명에 따라 제3차 회담을 결렬시킨 구보타 발언과 일본의 대한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고, 한일양국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킨 억류자 석방문제도 해결되었다. 또한 1953년 10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전면회담을 1958년 3월 1일에 재개하기로 하였다.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구두전달사항을 바탕으로 일본 측이 한국 측에게 문화재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V.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일양국의 인식

한일양국은 위와 같은 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된 구두전달사항과 그를 통한 106점의 문화재의 인도에 대해 각각 반환과 기증의 의미로 해석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구두전달사항 등 합의된 사항의 이행 및 전면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주일한국대표부에게 지시하였는데,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구상서약에 의하여 반환할 한국예술품

69)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3 1958.1-4)』, 프레임 번호: 1977.

의 목록을 1958년 2월 1일까지 확보하도록 하되…”, “예술품의 실제 반환에 있어서도 1958년 2월 말까지를 제1차 기한으로 하되…”로 문화재를 반환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⁷⁰⁾ 한국의 언론 또한 “97종의 문화재, 일본 측서 반환”,⁷¹⁾ “문화재 일부 반환”,⁷²⁾ “일본, 4백 종의 목록도 한국에 전달-문화재 97종 우선 반환”⁷³⁾ 등 구두전달사항을 통한 문화재의 인도를 반환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1958년 6월 13일에 열린 외무부 관계자의 기자회견에서였다. 외무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일양국이 한국미술품의 반환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였다,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인해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다, 106점의 미술품은 주일한국 대표부에 보관되어 있다, 일본 측이 제출한 489점의 미술품 리스트를 포함한 문화재 문제는 전면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답변을 하는 한편, “일본 측은 한국의 미술품을 ‘기증’으로써 한국에게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의견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우리가 소유한 권리로써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즉 한국정부는 106점의 문화재를 반환의 의미로써 인도받은 것이었다.

반면 일본정부의 인도에 대한 해석은 기증 또는 증여였다. 1957년 12월 30일에 열린 임시각료회의에서 마쓰나가 토(松永東) 문부대신은 구두 전달사항에 대해 “인도는 ‘증여’의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증여 품목, 수령 등은 일본 측이 선택·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⁷⁴⁾고 발언하였고, 대장성도 1958년 4월 15일, 107점의 문화재 인도에 대해 “1957년 12월 31일, 한국에 대한 구두전달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소유한 한국 미술품에 대해… (중략) … 표본용 물품으로써 한국에게 양여할 수 있는 것으

70)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2041~2042.

71) 『동아일보』, 1958년 4월 18일.

72) 『경향신문』, 1958년 4월 18일.

73) 『조선일보』, 1958년 4월 18일.

74) 『韓国關係文化財參考資料』, 文書番号: 567.

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였다.⁷⁵⁾ 이러한 인식은 106점의 문화재가 인도된 이후 열린 국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타가키 오사무(板垣修) 아시아국장은 1958년 5월 31일에 열린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문화재의 인도에 대해 “일본 측은 호의적인 제스처로써 약간의 것을 상대방에게 증여한다는 것으로 구두의 신사협정을 맺은 것인데…”, “한국이 독립을 했고, 그에 대한 하나의 선물로써 일본 측은 호의로 약간의 것을 증여한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졌던 것이었다”라고 답변하였다.⁷⁶⁾ 즉, 외무성, 문부성, 대장성 등 일본정부는 106점의 문화재를 기증의 의미로써 한국에게 인도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일양국은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인도된 106점의 문화재에 대해 각각 반환과 기증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하였던 것이었다.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회담 중단기의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 측은 일본 측에게 문화재를 받기 위해 반환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인도로 그 입장을 바꾸었고,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문화재를 인도한다는 의미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두전달사항의 표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재개될 전면회담에서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일본 측은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드리는 한편, 인도 시기와 관련된 표현에 관해서는 문부성 측의 반대와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구두전달사항이 합의되었고 제4차 회담의 개최 직후, 일

75) 題目なし, 1958年 4月 15日, 文書番号: 1118.

76) 『第28回国会参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1958年 5月 31日.

본 측은 106점의 문화재를 한국 측으로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두전달사항은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한일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첫 번째로 구두전달사항은 회담 중단기 이후의 문화재 문제 교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한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그 외의 한국 미술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면회담에서의 논의하기로 한다”라는 표현이 구두전달사항에 삽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회담에서 문화재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문화재 위원회는 제7차 회담까지 개최되었으며 이외에도 제5차 회담 때부터 개최된 전문가 회의, 그리고 그 개최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제6차 회담 때의 특별 위원회의 합의 또한 같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 측이 제6차 회담에서 인도를 제안한 것도 이 구두전달사항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한국 측은 제4차 회담에서 제5차 회담까지 다시 반환을 주장하였지만, 제6차 회담을 진행하면서 인도를 제안하였다. 한국 측은 제6차 회담 개최 이전에 문화재 문제 해결 방법의 선택지로서 인도를 상정하고 있었고,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1961년 11월 12일)과 예비교섭(같은 해 12월 21일)에서 구두전달사항의 인도를 명목으로 하여 문화재를 반환함으로써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게 제안하였다. 이후 인도는 반환의 방법으로써 한국 측의 문화재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침이 된다. 이렇듯 구두전달사항은 문화재 문제를 논의하는 틀과 그 해결 방법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로 구두전달사항은 이후의 한일회담에 있어서 한일양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식을 예상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 합의였다. 한일회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써 위와 같은 해결 방식을 들 수가 있는데, 기본관계문제의 큰 쟁점이었던 제2조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모든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한 반면, 일본 측은 과거의 조약들은 합법이며 한국이 독립한 시점부터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측이 제공한 5억 달러에 대해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은 자금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 측은 5억 달러는 청구권과는 관계없으며 경제협력자금으로써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문화재 문제에 관련해서도 1,400여점의 문화재 인도에 대해 한국 측은 반환이라고 해석한 반면, 일본 측은 기증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협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해결방식에 관한 최초의 공식합의가 구두전달사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 문제가 한일회담의 타결을 결정짓는 의제는 아니었지만, 기본관계문제, 청구권 문제 등의 쟁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5월 1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6월 2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6월 6일

참고문헌

〈1차 자료〉

-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화위원회회의록, 제1-8차, 1952. 2.20.-4.1』.
- 『제3차 한일회담(1953.10.9.-21)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2차, 1953.10.9.-15』.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2 1957)』.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 (V.3 1958.1-4)』.
- 「板垣アジア局長, 三宅參事官と柳公使, 崔參事官會議要領」, 記入なし, 1957年 7月 31日, 文章番号: 108.
- 「三宅參事官, 崔參事官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15日, 文書番号: 111.
- 「昭和三十三年八月二十日 三宅參事官と崔參事官會談録」, 記入なし, 1957年 8月 20日, 文書番号: 111.
- 「中川アジア局長, 三宅參事官と崔參事官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 15日, 文書番号: 112.
- 「板垣アジア局長, 柳公使との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8月 20日, 文書番号: 114.
- 「十一月二七日の藤山外務大臣と金大使との會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11月 29日, 文書番号: 115.
- 「韓國國寶古書籍目錄日本各文庫所蔵 (但一部調査未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文章番号: 379.
- 「韓國國寶古書籍目錄 (第二次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文章番号: 380.
- 「金公使との會談要旨」, 記入なし, 1952年 1月 9日, 文書番号: 396.
- 「日韓會談重要資料集」, 北東アジア局, 1960年 4月 1日, 文書番号: 525.
- 「日韓會談問題別經緯(6) (文化財問題)」, 北東アジア課, 1962年 7月 1日, 文章番号: 535.
- 「韓國關係文化財參考資料」, 文化財保護委員會, 1958年 2月 6日, 文書番号: 567.
- 「韓國文化財の提供について」, アジア二課, 1953年 10月 23日, 文書番号: 567.
-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12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0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1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2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會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3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会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5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会談の件」, 外務省, 1957年 2月 28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会談の件」, 外務省, 1957年 3月 2日, 文書番号: 680.
- 「金公使と会談の件」, 外務省, 1957年 3月 6日, 文書番号: 680.
- 「岸総理金公私と会見の件」, 外務省, 1957年 3月 9日, 文書番号: 682.
- 「六月十六日大野次官と金韓国大使との会談要領等」, 記入なし, 1957年 6月 17日, 文書番号: 686.
- 「六月十三日, 大野次官, 金韓国大使会談要領(その二)」, 外務省, 1957年 6月 13日, 文書番号: 686.
- 「岸総理, 金韓国大使会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 7日, 文書番号: 687.
- 「岸総理, 金大使会談要領」, 記入なし, 1957年 6月 11日, 文書番号: 687.
- 「日韓交渉会議議事要録(二二) 第三回請求権関係部会」,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6月 15日, 文書番号: 693.
- 題目なし, 1958年 4月 15日, 文書番号: 1118.
- 「日韓会談第一回財産請求権問題委員会議事録」, 記入なし, 文書番号: 1174.
- 「日韓会談第三回請求権委員会議事要録」, 記入なし, 文書番号: 1177.
- 「日韓会談第三回請求権委員会議事録」, 記入なし, 文書番号: 1178.
- 「韓国側再修正案に対する対応要領案」, 記入なし, 1957年 6月 25日, 文書番号: 1521.
- 「総理訪米後の日韓交渉の経緯」, 記入なし, 1957年 9月 4日, 文章番号: 1522.
- 「日韓交渉の経緯と現状(アジア太平洋地域館長会議におけるアジア局長説明資料)」, ア一課, 1958年 3月 10日, 文書番号: 1535.
- 「金公使と会談の件」, 外務省, 1956年 10月 30日, 文書番号: 1431.

<단행본>

- 김용식, 『새벽의 약속-김용식 외교 33년』, 김영사, 1993.
- 金東祚, 林建彦 訳, 『韓日の和解-日韓交渉14年の記録』, サイマル出版社, 1993.
-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연구 논문>

-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한국독립운동연구』 Vol.25, 2005.

- 류미나,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집, 2009.
- 류미나,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1958년 일본의 제1차 문화재 반환까지의 교섭과정을 사례로-」, 『일본역사연구』 제32집, 2010.
- 류미나, 「문화재 반환과 둘러싼 한일회담의 한계-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0집, 2014.
- 박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2010.
- 조운수,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No.51, 2016.
- 長澤裕子, 「日韓會談と韓国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請求權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社, 2011.

〈학위 논문〉

-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식민지관계 청산연구 : 청산소멸의 정치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嚴泰奉, 「日韓會談の文化財問題に関する考察-官僚政治モデルを中心に」, 東北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課程前期修士論文, 2011.

〈그 외〉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第28回国会参議院外務委員会會議録』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Break Period of the Korea-Japan Talks

Tae-Bong Um

This paper examines the oral statement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break period of the Korea-Japan talks, and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oral statement regarding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Korea-Japan talks.

In the discussion process, Korea attempted to modify the oral statement in order to dispel the meaning of the unilateral transfer of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to persisting with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of the cultural properties at the overall talks. Japan accepted most of the Korean revision requests, but strongly opposed the expressions related to the time of delivery.

This oral statemen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surrounding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after the break period during the Korea-Japan talks, and the expression “turn over” was the first formal agreement on the solution that allowed the two countries to interpret the agreement signed at the 7th Korea-Japan talks differently.

Key words

Korea-Japan talks,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oral statement, turn over, diplomatic negotiations